

복무관리지침 개정에 이견 없이 동의함

2016.1.25

케이티 노동조합
위원장 정 윤 모 (인)



【복무관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】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3조 (용어의 정의) <생략></p> <p>1. <생략></p> <p>2. <u>시간외</u>근무 :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</p> <p>3.~9. <생략></p>	<p>제3조 (용어의 정의) <생략></p> <p>1. <생략></p> <p>2. <u>연장</u>근무 :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</p> <p>3.~9. <생략></p>	용어 정리
<p>제19조 (<u>시간외</u> 및 야간근무)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<u>시간외</u>근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. 다만, 산후 1년 이 지나지 아니한 여직원의 경우 1일 2시간, 1주 6시간,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<u>시간외</u>근무를 시키지 못한다.</p> <p>② <생략></p> <p>③ 임신중인 여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경이한 근무로 전환하며, <u>시간외</u> 근무를 시키지 아니한다.</p> <p>④ <생략></p> <p>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<u>시간외</u>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.</p>	<p>제19조 (<u>연장</u> 및 야간근무)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<u>연장</u>근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. 다만,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직원의 경우 1일 2시간, 1주 6시간,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<u>연장</u>근무를 시키지 못한다.</p> <p>② <생략></p> <p>③ 임신중인 여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경이한 근무로 전환하며, <u>연장</u>근무를 시키지 아니한다.</p> <p>④ <생략></p> <p>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<u>연장</u>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.</p>	용어 정리

제27조 (휴가) 직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1~10. <생략> 11. <u>(신설)</u>	제27조 (휴가) 직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1~10. <생략> 11. <u>안식년휴가</u>	안식년휴가 도입
(신설)	<p><u>제40조의2 (안식년휴가)</u> ① 직원이 근속 10년, 20년, 30년 도래 시 아래와 같이 안식년휴가를 부여하며 이 경우 아래에 정한 연차휴가를 함께 연속하여 사용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근속10년 : 안식년휴가 5일 + 연차휴가 5일 2. 근속20년 : 안식년휴가 8일 + 연차휴가 7일 3. 근속30년 : 안식년휴가 8일 + 연차휴가 7일 <p>② 제1항의 휴가는 해당 근속 도래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여야 한다. 단, 해당 근속 도래일에 장기휴가(병가제외) 또는 휴직 중일 경우에는 업무 복귀일로부터 1년 내로 한다.</p> <p>③ 회사는 인력운용과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 항의 기간 내에서 안식년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</p>	안식년휴가 도입

※ 부칙 (2015.XX.XX)

이 지침은 2016.01.01.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제2호(청원휴가대상일수표)의 개정규정은 2015.11.16.부터 시행한다.

【복무관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】

현 행				개 정				비 고
(별표 2) 청원휴가대상일수표				(별표 2) 청원휴가대상일수표				
구분	대상	일수	비고	구분	대상	일수	비고	
결혼	<생략>	<생략>	<생략>	결혼	<생략>	<생략>	<생략>	
회갑/칠순	<생략>	<생략>	<생략>	회갑/칠순	<생략>	<생략>	<생략>	
사망	배우자	6		배우자	6			외조부모 사망시 휴가일수 확대
	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			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				
	승증상			승증상				
	자녀	5		자녀	5			
	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			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				
	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	3		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	3			
	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			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				
	본인 또는 배우자의 백숙부모			본인 또는 배우자의 백숙부모				
	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	1		본인 또는 배우자의 고모, 고모부, 이모, 이모부, 외숙부모	1	<생략>		
	본인 또는 배우자의 고모, 고모부, 이모, 이모부, 외숙부모		<생략>	본인 또는 배우자의 고모, 고모부, 이모, 이모부, 외숙부모		<생략>		
탈상	<생략>	<생략>	<생략>	탈상	<생략>	<생략>	<생략>	
출산	<생략>	<생략>	<생략>	출산	<생략>	<생략>	<생략>	
재해	<생략>	<생략>	<생략>	재해	<생략>	<생략>	<생략>	

* <생략>